



규정

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A708
제정일자	2023. 02. 28.
개정일자	
개정번호	페이지 1/5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2023. 02. 28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직 책	담 당	교무학생처장	사무처장		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8	
		제정일자	2023. 02. 28.	
	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3/5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건학이념, 사명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중장기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, 추진, 평가,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발전계획은 대학의 건학이념, 사명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전, 전략과제, 실행과제, 특성화계획, 성과지표 및 재정운영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말한다.

제3조(주관부서) ① 발전계획의 수립, 추진, 평가,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업무는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
1.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
2. 발전계획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
3. 발전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업무
4. 기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

제4조(발전계획 수립) ① 발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.

1. 환경분석(외부환경분석 및 내부여건분석)
2. 구성원 의견 수렴
3. 대학 비전 및 목표
4. 인재상 및 교육목표
5. 전략과제 및 실행사업
6.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및 재정운영계획
7. 기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

② 대학 발전계획은 대학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예산처가 계획을 수립하되 세부 실행사업은 각 행정부서 및 학과가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, 기획예산처는 각 부서별 제안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취합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 기획예산처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은 공청회 의견 조정과 기획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,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8	
		제정일자	2023. 02. 28.	
	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4/5

④ 발전계획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한다.

제5조(발전계획의 추진 및 관리) ① 대학 발전계획의 실행 및 관리, 성과 점검 등에 관한 실무는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며, 중간점검 결과를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하고, 사업의 보완 및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.

② 기획예산처는 매년 학과 및 행정부서와 협의하여 대학 발전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연도별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을 세워 기획예산위원회 심의를 받는다.

③ 각 행정부서 및 학과는 대학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평가) ① 대학 품질개선 및 자체평가를 통해 매년 발전계획의 연차별 추진성과를 평가하며,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하고, 연차별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 전략과제별 성과지표
2. 각 행정부서 및 학과 연차별 성과 목표
3. 구성원 만족도 조사
4. 기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


제7조(개선 및 환류) ① 발전계획의 전략과제별 실행사업 이행에 대한 연차별 결과보고서는 대학 구성원에게 공지한다.

② 각 행정부서 및 학과는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차년도 세부 실행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, 기획예산처는 각 행정부서 및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 기획예산위원회는 차년도 실행사업에 관한 개선 또는 보완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, 대학 발전계획에 반영한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8	
		제정일자	2023. 02. 28.	
	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페이지	5/5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